

##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# 1. 주요 법적근거

#### ○ 지방공무원법

- 제66조 제1항 -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1급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, 5급이상 공무원  
- 60세, 6급이하 공무원 -57세
  2.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 하는 일반직공무원, 연구관 및 지도관 - 60세, 연구사 및 지도사 - 57세, 기타 특수기술직렬 공무원 - 57세 내지 60세
  3. 기능직공무원, 방호직렬공무원 - 59세, 기타 직렬공무원 - 50세 내지 57세
- 제2항 -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항 -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.
- 제66조의 2 제1항-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항-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· 분합,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항-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  
대상범위 · 지급액 ·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 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

· 제20조 제1항 - 법 제29조(건강진단)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

· 이하 생략……

○ 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(99. 12. 7) : 내용 생략

## 2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업무 개정예규(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)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휴가제도개선, 퇴직공무원의 퇴직휴가제도개선, 특별휴가 대상의 개선등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